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382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21. 3. 16

판결 선고 2021. 4. 6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9. 12. 13. 접수 60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 9. 20. D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는 D에 대하여 2020. 7. 31. 기준 59,129,305원의 리스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는 2019. 12. 11.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2019. 12.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와 같이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부동산은 종종 재산인데 D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 던 것이므로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책임재산에 속하고,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피고와 D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재욱

별지